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6247 판결 [보증채무금]

재 판 경 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624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6024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단363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홍성부동산

판결 선고2017. 8. 18.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602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B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에서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